

# Chemicals Handling

## Standard



## 목차

1	소개.....	3
2	정의.....	3
3	책임.....	3
	3.1 관리자/책임자.....	3
	3.2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개인.....	4
4	요건.....	4
	4.1 일반 요건.....	4
	4.2 물질 안전 보건 자료.....	5
	4.3 표시 및 분류.....	5
	4.4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	5
5	근로자 건강상태.....	5
6	위험성 평가 및 계획 수립.....	5
7	모니터링 및 검토.....	6
8	참조.....	6
9	변경 사항.....	6

© Ericsson AB 2021

All rights reserved. 본 문서의 정보는 Ericsson 의 소유물이며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ricsson 은 사실상 부정확한 내용이나 철자 오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소개

이 기준은 Ericsson 을 대신하여 작업할 때 안전하며 환경적으로 건강하게 화학 물질을 취급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최대한 가장 안전한 대안을 선택하여 화학 물질 취급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십시오.
-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 만들어진 규정이 화학 물질 취급에 관한 현지 법령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위험성 평가의 일환으로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가 식별, 평가되고 효과적으로 관리되는지 확인합니다(예: 위험 요인, 노출).
- 개인 보호구(PPE)의 제공, 사용, 보관을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 환경 보호를 위한 장비의 제공, 사용, 보관을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현지 법령이 이 지침의 요건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경우, 현지 법령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는 화학 물질의 사용 수명 단계(예: 화학 물질의 사용, 저장, 운송)에 적용됩니다. 화학 물질에서 파생된 폐기물 관리는 유해 폐기물로 분류되어야 하며, 이 지침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2 정의

“**화학 물질 취급**”에는 화학 물질의 사용, 보관, 운송이 포함됩니다.

“**현지 안전 지침**”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현지 안전 지침을 의미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특정 화학 물질과 관련된 위험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취해야 하는 안전 예방 조치와 관련하여 상업적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제조업체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의 정확한 형식은 현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3 책임

## 3.1 관리자/책임자

관련 관리자/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화학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는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관련 개인보호구(PPE)를 사용해야 합니다.
- 특정 화학 물질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근로자는 해당 화학 물질이 포함된 작업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 임신한 근로자는 화학 물질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3.2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개인

근로자는 화학 물질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강 상태(또는 임신)를 고용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규정되어 있고 위험성 평가 상에 안전 대책으로 명시된 개인보호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 4 요건

### 4.1 일반 요건

다음 요건이 적용됩니다.

- 작업장 화학 물질 관리자를 임명해야 하며, 그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학 물질 저장 장소 관리
  - 화학 물질 목록 작성
  - 주기적인 점검
  - 화학 물질 사용자 교육
- 화학 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 경감/제거 계획을 수립하며, 관련 대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 다음의 물질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Ericsson의 금지/제한 물질 목록](#)
- 화학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는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관련 [개인보호구\(PPE\)](#)를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되는 모든 화학 물질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화학물질 목록에 포함
  -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사용 위치 포함)
  - 손상되지 않고 표시가 된 밀폐 용기에 보관
  - 관련 법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라 보관, 사용, 폐기

요청 시 화학 물질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 4.2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물질 안전 보건 자료**”는 특정 화학 물질과 관련된 위험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취해야 하는 안전 조치와 관련하여 제조업체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의 정확한 형식은 현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화학 물질 사용자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포함된 정보와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는 최소한 각 화학 물질의 특성에 관한 정보, 신체, 보건, 환경에 대한 위험, 보호 조치, 화학 물질 취급, 보관 그리고 운송을 위한 안전 예방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 현지 언어로 작성
- 화학 물질이 사용/저장되는 곳에서 쉽게 이용가능
- 여분의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준비
- 최신 정보로 유지

## 4.3 표시 및 분류

화학 물질은 언제나 화학 물질 이름과 위험 기호로 올바르게 표시해야 합니다. (작은 용기로 옮겨 담는 경우도 포함)

## 4.4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

위험 물질,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은 포괄적인 현지 위험성 평가 및 [화재 예방책](#)에 따른 안전 조치를 실행한 후에 취급해야 합니다.

## 5 근로자 건강상태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 상태는 위험성 평가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직장에서 자신이나 직장 동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 질병이나 기타 드러난 질병에 대해 고용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특정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근로자는 그러한 사실을 라인 매니저에게 알려야 합니다.

## 6 위험성 평가 및 계획 수립

위험성 평가는 화학 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에는 필요한 교육, 근로자의 건강 상태(허용되는 경우), PPE 및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명시된 사항을 충족 기타 통제 조치, 덜 위험한 대체물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됩니다.

사용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현지 위험 평가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는 인력 변경, 새로운 위험 정보, 사용 증가에 따른 노출 증가, 또는 작업 프로세스나 환경의 기타 변경일 수 있습니다.

## 7      **모니터링 및 검토**

덜 위험한 대체물질로 교체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년 화학 물질 사용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검토/기록함으로써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사고 통계 자료
-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된 화학 물질의 양과 유형
- 근로자별, 화학 물질별 교육 기록

## 8      **참조**

[Ericsson의 금지/제한 물질 목록](#)

## 9      **변경 사항**

마지막 개정 이후 변경 사항 요약:

- 1 소개 업데이트
- 2 정의와 책임에 단락 추가
- 3 요건에 작업장 화학 물질 관리자 및 책임 추가
- 4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단락 내의 설명
- 5 근로자 건강상태 추가